

2022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수요기업 모집 공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 촉진 및 비대면 서비스 분야 육성을 위해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수요기업'으로 참여할 우수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2년 3월 14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모집개요

□ **사업목적** : 화상회의, 재택근무(협업 Tool) 등 서비스 지원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 촉진 및 비대면 서비스 분야 육성

□ **모집대상** : 중소기업

□ **모집규모** : 15,000개사 내외

□ **지원내용 및 조건**

- 비대면 서비스 도입·활용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400만원**(자부담금 30% 포함) 이내 바우처 지급
-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70%(최대 280만원)까지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공급가액의 30% 및 부가가치세는 수요기업이 부담

□ **지원방식**

- 서비스 활용계획 평가 등을 통해 고득점 순으로 바우처 지급

- 수요기업이 바우처를 지급받아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www.k-voucher.kr, 이하 '플랫폼')에 등록된 서비스 상품을 선택 후, 결제·이용

* 지원 중 휴·폐업 등 중단사유 발생시, 발생월을 기준으로 바우처 사용 제한 환소조치

□ **서비스 제공 분야** : 중소기업의 원격근무 확산 및 디지털화 촉진을 위한 화상회의, 재택근무(협업 Tool), 네트워크·보안 솔루션 분야 등 3개 분야

< 제공 서비스 분야 >

비대면 서비스 분야	개요
① 화상회의	기업 내·외부간 회의, 영상면접 등 온라인을 활용한 화상회의 서비스
② 재택근무(협업 Tool)	기업 내 임·직원의 재택근무 등에서 활용이 가능한 업무 파일 및 화면 공유 등 온라인 협업 클라우드 서비스
③ 네트워크·보안 솔루션	해킹 방지 및 정보보안 등을 위한 온라인 보안 서비스

* '20~'21년에 지원되었던 3개 분야 서비스(에듀테크, 돌봄서비스, 비대면 제도 도입 컨설팅)는 '22년 지원 대상에서 제외

2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① '20년, '21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선정되어 바우처를 일 부라도 지원받은 수요기업은 '22년도에 재신청 불가

- 다만, 장애인·여성기업은 최대 2회까지 신청(지원) 가능

< 장애인·여성기업 지원가능 사례 예시 >

구분	2020	2021	2022	비고
기업 1	○	○	지원불가	-
기업 2	○	×	지원가능	'20, '22년 장애인·여성기업 限
기업 3	×	○		'21, '22년 장애인·여성기업 限

* 1회차 지원받은 연도의 사업신청일과 '22년 사업신청 마감일('22.4.14) 모두 장애인·여성기업(장애인·여성기업 확인서 상의 유효기간에 포함)이어야 함

② 대표자가 같은 다수 기업(법인, 사업체)은 1개 기업만 신청 가능

□ **신청(지원) 제외 대상 : 아래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기업

* 예외 : 사업신청일 전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기업,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신청(지원) 가능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기업

* 예외 :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사업신청일 전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신청(지원) 가능

☞ ①, ②의 '예외'에 해당되는 자(기업)는 신청 시, 관련 증빙 필수 제출

③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기업

④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주된 업종*이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

No	대상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1	일반유흥주점업	56211
2	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함

⑤ 고용원이 없는 사업자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를 기준으로 고용원이 없는 사업자

⑥ 기타 중소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대표자 및 기업)

3

선정 후 지원내용

□ **서비스 상품 선택·신청**

- (바우처 결제수단 발급) 선정된 기업은 '플랫폼'에 로그인 후 바우처 결제수단 발급신청

■ **바우처 결제수단** : 바우처카드(신한 체크카드) 또는 바우처상품권(선불 충전식 모바일 상품권) 중 택일

① 바우처 카드를 이용할 경우

- 개인체크카드는 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신규 계좌개설 필요없이 보유 중인 모든 은행계좌와 연결 가능
- 법인체크카드는 신한은행 창구를 방문하여 신청(기업은행, 우체국, 농협, 신한은행 계좌와 연결 가능)

② 바우처 상품권을 이용할 경우

- 바우처상품권(선불충전식 모바일상품권)은 "B2B제로페이 결제 플랫폼" 및 "비플제로페이(어플리케이션)" 회원가입 필요

* 결제수단 발급 시 기업 대표자 인증 必(대표자 명의의 결제수단 발급 예정)

- (서비스 선택) '플랫폼'에서 기업에 필요한 분야별* 서비스 상품과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기업을 선택

* 바우처 사용은 신청시 선택한 서비스 분야의 상품만 가능(2개 이상 복수선택 가능)

** 서비스 활용 계획서 상에 선택한 서비스 분야 활용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야 함

- (서비스 신청) 공급기업에 선택한 서비스 상품 제공 승인을 요청

* 과기부(클라우드 서비스 바우처) 등의 유사사업을 지원받은 기업은 **해당 분야 이외의 비대면 서비스만 신청 가능**

□ **바우처 사용**

- (공급기업 확인) 수요기업이 신청한 서비스 상품에 대해 공급기업이 서비스 상품 제공 여부를 결정

- (기업부담금 입금) 플랫폼 내 '결제하기' 클릭 전, 수요기업의 바우처 사업 계좌에 **자부담금**(공급가액의 30%)과 **부가가치세** 입금

○ (서비스 이용 결제) 바우처카드(체크카드) 또는 상품권(선불충전식 모바일상품권)으로 '플랫폼'에서 결제

- 1개 공급기업에 바우처 결제금액 기준 최대 220만원(부가가치세 포함)까지 결제가 가능하므로, 바우처 한도 내에서 최소 2개 이상 서로 다른 공급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함

* 단, 220만원을 초과하는 서비스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해당 서비스 상품 가격만큼 결제를 허용

< 서비스 상품 가격 구성(예시) >

상품가격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부가세
	정부 지원금 (70%)	자부담금 (30%)	
2,200,000원	1,400,000원	600,000원	200,000원

* 공급가액 기준으로 정부 지원금은 최대 70%(최대 280만원)를 지원하고, 나머지 자부담금 및 부가가치세는 수요기업이 부담(※ 부가세는 추후 국세청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음)

○ (서비스 이용) 서비스 상품 결제 시 공급기업과 계약이 성사되며, 아래의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24개월 이내 서비스 상품을 이용

- 전담기관(창업진흥원) 및 운영기관(이노비즈협회)은 공급기업으로부터 수요기업의 로그인 기록 및 로그기록을 제출받아 수요기업의 서비스 사용 여부를 확인

< 서비스 상품 이용 유의사항 >

- ① 서비스 상품 결제 후 30일 이내에 최소 1회 이상 해당 상품을 이용하여야 하며, 미이용할 경우 자동으로 결제 취소 및 사업비 환수
 - ② 3개월 연속 서비스 상품 이용기록이 없는 경우 바우처 지원이 중단되며, 잔여 이용기간을 월할 계산하여 사업비 자동 환수*
- * 지원 중단(환수)시 해당 환수금액은 바우처 재사용이 불가

□ 바우처 결제 기한 : 최종 선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1회 이상 결제하여야 하고, 최종 선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바우처 잔액을 결제 완료하여야 함

○ 최종 선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1회 이상 결제하지 않은 경우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고, 최종 선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바우처 잔액을 결제하지 않은 경우 잔액은 환수조치됨

4 신청 및 선정 절차

□ 신청기간 : 2022년 4월 1일(금) 09:00 ~ 4월 14일(목), 16:00까지

* 2022년 모집규모의 2배수(3만개 내외)를 초과하는 경우 신청은 조기 마감

□ 신청방법 :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www.k-voucher.kr)에서 온라인 신청

<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온라인 신청절차 >

① 플랫폼 접속 → ② 약관동의 및 본인인증 → ③ 로그인 정보 입력 → ④ 대표자 및 기업 정보 입력 → ⑤ 제출서류 업로드 → ⑥ 서비스 활용계획 입력(업무환경 및 서비스 필요성 400자 내외, 서비스 활용계획 600자 내외) → ⑦ 제출

- * 대표자가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한 경우, 1개의 사업자만 신청 가능
- * 사업신청 및 본인인증은 기업 대표자 또는 실무책임자(소속 직원)에 한하고 동일 인이 2개 이상의 수요기업을 신청할 수 없음(공급기업 또는 제3자를 통한 대리 신청 및 대리결제 금지)
- * 신청시 이용 서비스 분야를 선택(2개 이상 복수선택 가능)하고 업무환경 및 서비스 필요성, 서비스 활용계획을 필수로 입력하여야 함

□ 제출서류 : 아래 서류 업로드

구분	제출서류(사본 가능)	
필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신청 마감일(4.14)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기업)	
	·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에 한함)	사업 신청기간 내 작성분에 한함 (별첨1, 별첨2 참고)
	· 청렴서약서	
해당시 (가점)	· 사업수행 협약서	사업신청 마감일(4.14) 기준 유효한 인증서에 한함 (별첨3 참고)
	①벤처기업, ②이노비즈기업, ③메인비즈기업, ④강소기업, ⑤소부장 강소기업, ⑥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⑦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⑧장애인기업, ⑨여성기업, ⑩가족친화인증기업 ⑪창업초기기업(3년)	

* 서류 누락 및 식별 불가(본인 확인 불가 등) 시 탈락 처리될 수 있음

□ 지원대상자 확정

< 지원대상자 확정절차 >

평가단계	수행기관	수행내용
요건검토	운영기관 (이노비즈협회)	· 신청자격, 신청(지원)제외 요건 등 확인
서류평가		· 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비스 활용계획 평가
최종선정		· 선정 기업을 대상으로 개별 안내

- **(평가절차)** 신청기업에서 제출한 서비스 활용계획 및 증빙서류 등을 바탕으로 요건검토, 서류평가를 통과한 기업을 최종 선정
- **요건검토** : 운영기관이 수요기업 참여 자격 검토를 통해 서류평가 대상자 선정
- **서류평가** : 지원 필요성, 활용계획의 구체성·적절성 등 서비스 활용계획을 종합적으로 서면 평가(가점 합산)

< 서류평가 지표(안) >

서비스 활용계획 항목	평가위원회 평가
■ 업무환경 및 서비스 필요성 (400자 내외) ■ 서비스 활용계획 (600자 내외)	■ 지원 필요성 (40점) ■ 활용계획의 구체성·적절성 (60점)

* 평가배점은 세부적으로 구체화될 수 있음

< 서류평가 가점항목 및 점수(최대 20점) >

가점내용	제출서류	점수
고용원수	■ 2~4인(2점), 5~9인(4점), 10~19인(6점), 20~29인(8점), 30~39인(10점)	최대 10점
정책우대*	■ ①벤처기업, ②이노비즈기업, ③메인비즈기업, ④강소기업, ⑤소부장 강소기업, ⑥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⑦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⑧장애인가기업, ⑨여성기업, ⑩가족친화인증기업 ⑪창업초기기업(3년)	최대 10점 (건별 3점)

* 사업신청 마감일(4.14) 기준 유효한 인증서에 한함

* ⑩ 가점은 사업신청 마감일(4.14)을 기준으로 업력(개인 : 개업연월일 / 법인 : 회사 설립연월일) 기준 3년 미만 기업

- **최종선정** : 서류평가 점수(100점)와 가점(20점)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바우처를 발급 (단, 동점자 발생 시 신청·접수 순으로 바우처 발급)

* 중기부 '디지털전환 컨설팅' 수행기업, 고용부 '재택근무 종합컨설팅' 수행기업으로 관련 기관에서 추천한 기업은 서비스 활용계획 평가(가점 포함)를 제외하고 우선적으로 바우처를 지원

5 추진절차 및 일정

□ 추진절차 및 일정

※ 세부추진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공 고	신청·접수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중소벤처기업부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www.k-voucher.kr)	운영기관(이노비즈 협회)
'22.3.14.	'22.4.1. ~ '22.4.14.	'22.4월~5월
사용 점검	바우처 사용(결제)	지원대상자 확정
운영기관(이노비즈 협회)	수요기업 (플랫폼 내에서 전액 사용)	운영기관(이노비즈 협회)
필요시 현장점검 가능	선정일로부터 90일 이내 * 선정 후 60일 이내 1회 이상 결제 필수	*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개별통보
		'22.5월

6 유의사항

◆ 본 사업에 신청하는 기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①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② 부정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보조금 부정수급자로 명단이 공표될 수 있습니다.
- ③ 중소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조치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관련 유의사항

- 사업 신청은 온라인만 가능하며, 신청 시 제출서류 누락 및 식별 불가(본인 확인 불가 등) 할 경우, 탈락 처리될 수 있음
- 신청기간 내 모든 제출서류(가점서류 포함)를 플랫폼에 업로드하여야 하며, 신청기간 종료 이후 제출된 서류는 수정 및 반환 불가
- 수요기업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대표자 본인 또는 소속 실무자가 직접 회원가입 및 사업신청을 완료하여야 하며,
 - 공급기업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대리신청 또는 대리결제 하여서는 아니되고, 대리신청 또는 대리결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아울러, 사업에 선정되어 결제수단을 발급받을 시, 기업 대표자 명의의 결제수단 발급을 위하여 대표자의 인증을 필히 받아야 함
- 사업신청시 수요기업이 선택하지 않은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향후 해당 분야 서비스 상품 결제 불가

□ 평가 관련 유의사항

- 수요기업이 제출한 서비스 활용 계획서 및 증빙서류에 대한 진위 여부 파악 등을 위해 필요시 현장점검이 추가될 수 있음
-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휴일포함) 1회에 한하여 가능

□ 선정 관련 유의사항

- 선정된 수요기업은 1개 공급기업에 최대 220만원까지(부가세 포함)만 결제가 가능하며 서비스 상품이 예외적으로 2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해당 서비스 상품 금액만큼 결제가 가능

- 선정된 수요기업은 서비스 상품 결제 후 30일 이내에 최소 1회 이상 해당 상품을 이용하여야 하며, 미이용할 경우 결제 취소 및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바우처 결제 후 결제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공급기업과 협의 후 취소가 가능하지만 결제기한(최종 선정일로부터 90일 이내) 이후로는 결제금액 취소 불가
- 휴·폐업 등으로 최초 선정 당시 기업의 상태가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운영기관과 공급기업에 통보하여야 하며, 기업 상태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요기업에 있음
 - 사업비 환수가 발생하는 경우 서비스 상품 잔여 이용기간을 월할 계산하여 사업비가 임의 환수될 수 있음
- 수요기업은 공급기업의 서비스 상품을 이용함에 있어 이용실적(로그인·로그기록) 수집에 협조하여야 함
 - 이를 위해, 수요기업은 공급기업이 로그인·로그기록을 제3자(전담기관, 운영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사전에 동의하여야 함
 - * 제3자 제공동의서는 수요기업이 서비스 상품 선택 후 공급기업과 계약할 때 작성하며, 작성된 제공동의서는 공급기업이 전담기관 및 운영기관에 제출할 예정
- 본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 취소,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공고문·지침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

□ 부정행위 관련 유의사항

- 선정된 수요기업은 공급기업 또는 제3자로부터 서비스 결제의 대가로 금품 등을 수령("페이백")하여서는 아니되며, 금품 등 수령사실이 확인된 경우 선정취소, 환수 및 형사고발 조치될 수 있음
 - * (예시) 공급기업 C사는 수요기업 D사가 자사의 서비스를 구매하는 대가로 ○○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수요기업 D사에 제공
-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이 모의하여 부정하게 바우처(정부지원금)를 지급하거나 지원받은 예산을 규정(사용목적) 외 부정하게 집행할 경우, 부정행위 사안에 따라 부정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 부과,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R&D, 융자 등) 참여 제한, 부정당 사업자 등록 및 형사고발이 진행될 수 있음
- 전담기관과 운영기관은 선정기업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7 선정기업의 의무

- 선정된 수요기업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관리지침, 서비스 이용·제공 약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함과 동시에 공고문에 명시된 목적으로 바우처를 이용(집행)하여야 함
 - * 지침은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www.k-voucher.kr) 공지사항에 게시, 약관 동의는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에서 회원가입시 온라인으로 진행
- 선정된 수요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전담기관, 운영기관이 요청하는 자료제출, 점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된 수요기업은 전담기관 및 운영기관이 실시하는 점검 또는 관련 자료 제출·보완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해당 요구에 불응할 경우 수요기업 선정 취소,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및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7 기타 참고사항

- 신청·접수 등 사업 관련 문의 : 바우처 콜센터 (1670-1357)

별첨 1 청렴서약서 양식

청 령 서 약 서

참 여 기 업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당사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내용을 서약합니다.

1. 서비스 결제 대가로 자부담금, 현금 및 현물(노트북, 사은품 등)을 서비스 제공기업 또는 제3자(판매대행 등)에게 수령하지 않을 것
2. 서비스 제공기업 또는 제3자 등을 통해 사업을 대리신청 하거나 바우처를 대리 결제하지 않을 것

○ 이를 위반할 시에는 법령 및 지침에 따라 보조금 환수, 수사의뢰 또는 형사처벌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대표(이사) (인)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운영기관 귀하

별첨 2 사업수행 확약서 양식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사업 수행 확약서

본인(법인)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2022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수요기업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 취소 및 사업비 환수 등의 불이익도 감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 ① 서비스 상품 결제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최소 1회 이상 해당 상품을 이용할 것을 확인합니다.
- ② 휴·폐업 등 최초 선정 당시 기업의 상태가 변경되는 경우 사전에 운영기관과 공급기업에 통보할 것을 확인합니다.
- ③ '22년 동 사업에 대표자를 기준으로 1개의 사업자만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 ④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사업 관리지침, 공고문을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이사) (인)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운영기관 귀하

별첨 3 정책우대 가점 리스트

□ 해당 증빙서류(확인서, 가입증서 등)를 사업신청 시 플랫폼에 업로드

연번	항목	발급방법
1	벤처기업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 벤처확인위원회 심의·의결 →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발급
2	이노비즈기업	이노비즈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자가진단 → 기보 현장평가를 통한 선정 →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발급
3	메인비즈기업	메인비즈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자가진단 → 평가기관(기보·신보·한국생산성본부) 현장평가를 통한 선정 →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발급
4	강소기업	온라인 또는 우편(한국고용정보원)을 통한 신청 → 결격사유 확인 및 선정 →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발급
5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기술보증기금 사이버영업점(www.kibo.or.kr) 을 통한 신청 → 결격사유 확인 및 선정 → 수요기업 신청 시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선정서 업로드
6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중진공 지부를 통한 방문신청 →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발급
7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워크넷 사이트를 통한 참여신청 →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통한 청약 신청 →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발급
8	장애인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서류검토·현장실사를 통한 조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발급
9	여성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서류검토·현장실사를 통한 조사(한국여성경제인협회) →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발급
10	가족친화인증 기업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사무국 심사·선정 →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발급
11	창업초기기업 (업력 3년 이내)	수요기업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업로드 → 운영기관에서 별도 확인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3년 이내 확인 *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설립연월일' 기준 3년 이내 확인